

25.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0년 4월 9일
- 발 의 자 : 김태원 의원, 강성환 의원, 김지만 의원, 박우근 의원
배지숙 의원, 이시복 의원, 이영애 의원, 전경원 의원
- 회부일자 : 2020년 4월 13일
- 상정일자 : 제27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제1차 교육위원회(2020년 4월 22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김태원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, 차별과 편견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할 것을 규정함(안 제5조)
-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

실시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노인만)

○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▶ 안 제2조에서, ‘학교’, ‘장애’, ‘장애인’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
- ▶ 안 제3조에서,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
- ▶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,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 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

<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시행계획 포함 사항 >

1.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
2. 교육 활동 관리 및 담당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
3. 교재 개발, 교육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
4. 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▶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, 교육감은 학교에서 매년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관련 예산 지원 및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

○ 검토 결과

- ▶ 본 제정조례안은, 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 주기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음
- ▶ 현재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, 공무원, 근로자,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직원·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
- ▶ 아울러,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장애 이해교육 강화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수용태도 함양 및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를 확산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

【2019년 장애 이해교육 참여 학생 현황】

참여실적	교육방법	대한민국 1교시수업참여	장애 이해 드라마 시청	장애체험 활동참여	교내·외 강 사 참여	문화·예술 행사 참여	기타 (시설방문등)
	유치원	유치원 수	26	36	170	149	127
	학생 수	2,088	3,266	15,802	14,974	15,104	4,070
초등학교	학교 수	171	34	130	144	73	15
	학생 수	97,569	10,543	48,342	74,381	28,440	7,705
중학교	학교 수	23	63	49	72	33	16
	학생 수	11,836	30,189	19,473	42,050	1,886	9,127
고등학교	학교 수	57	19	52	31	27	1
	학생 수	40,428	8,932	39,628	20,479	130,478	406
계	학교 수	277	152	401	396	260	66
	학생 수	151,921	52,930	123,245	151,884	185,908	21,308

- ▶ 다만, 장애 이해교육 시 특정 장애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, 소속 장애학생의 학교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정책적 감수성이 필요하며, 각급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수정안요지

- 없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